

2026 농촌융복합산업 엑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참여 엑셀러레이터 모집공고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 보육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의 사업모델을 고도화함으로써 미래 농촌산업을 선도하고 투자 역량을 제고할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

모집규모 : 농촌융복합산업(농식품)분야 엑셀러레이터 2社

공고기간 : 2026. 2. 12(목) ~ 2026. 3. 5(목) 17:00까지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jeongin@ekr.or.kr ※ 접수 후 유선확인 권고

지원금액 : 280백만원/1개社

※ 본 공고는 「2026 농촌융복합산업 엑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를 모집공고입니다.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은 엑셀러레이터별 '26년 4월 중 별도 진행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식품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와 매칭·지원하여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받은 경영체

□ **모집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등록된 창업기획자

※ 상세 지원대상 요건은 [5.신청자격] 반드시 참고

□ **지원규모** : 총 560백만원(국비 100%) ※ 엑셀러레이터 당 280백만원 지원

□ **선정규모** : 총 2개사

□ **협약기간** : 협약일 ~ `26. 12. 31.

※ 선정 AC 2개사는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AC 경우 차년도 연장 우선검토(예정)

□ **사업내용**

-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인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10社 이상 선정
- 최종 선정된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10社 이상)에 대한 엑셀러레이팅

2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내용

□ 사업비 구성

○ (국고지원) 280백만원/社(국비100%)

사업비	항목	세부내용	총규모
국고 지원금	인건비	- 참여인력 인건비 등 (참여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포함)	120백만원 이하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컨설팅, 투자연계, 네트워킹, 데모데이 개최 등 추진비 * AC별 데모데이 최소 1회 이상 개최 필수 ** 전문가수당, 임차비, 행사비, 출장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비, 회의비, 회계검증 비용 등 운영 전반 활동비	160백만원 이상

○ (AC자금) AC 자체재원 2억원 이상

사업비	항목	세부내용	총규모
AC 자금	매칭투자 (필수)	- 선발된 육성기업에 직접투자 필수 * 사업종료 2개월이내(~10.31) 직접 투자금 집행 완료 후 증빙제출 **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한 투자규모 산정 (업체별 차등 투자 가능)	200백만원 이상
	사업화자금 (선택)	- (필요시) 선발된 육성기업 사업화자금 지원	자율

* 상기 매칭투자 완료 일정은 사업진행 내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세부항목

○ (자금지원) 참여인력 인건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자금, 교육지원

구분	세부내용	비고
자금지원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	
	(역량강화 교육) 액셀러레이터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 비용 제공	
	(프로그램 운영) 육성기업 선발 및 발굴, 멘토링, 교육, 행사 개최 활동비 지원	

* 농촌융복합사업 분야 트렌드 리딩, 투자 전문성 강화 등 농촌융복합 분야 내 대표 액셀러레이터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 강화 진행 가능

□ 사업수행 및 프로그램 내용

재원	구분	항목	세부내용
AC 자체	매칭투자 (필수) *2억원이상	투자연계	▶(직접투자) 선발 육성기업 대상 2억원 이상 직접투자 必 * 자체재원으로 집행(국고지원금 사용불가), 사업종료 2개월(~10.31)이내 ▶(후속투자) 투자자 연계, 비즈매칭 등 후속 투자유치 지원 * 후속투자는 사업종료 1개월(~11.30) 이내
	사업화자금 (선택)	사업화 자금	▶(필요시) 선발된 육성기업에게 사업화자금 AC자체 지원
국고 지원 금	인건비 *1.2억이하	참여인력 인건비	▶액셀러레이터社 사업 전담인력 구성 - 최소 3인이상 (사업책임자 1, 실무책임자 1, 실무담당자 1) ▶참여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에게만 지급 가능 ** 집행기간 및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참여 보육기업 선발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예비)농촌융복 합인증사업자를 액셀러레이터별로 선발 * 선정기업별 농촌융복합분야 (예비)인증사업자 10社 이상 선발 필수 ※ 'AC社의 육성기업 발굴·선발 시 유의사항' 반드시 참조
	홍보	▶본 사업 및 참여팀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영상 등 콘텐츠 제작·배포	
	교육 ·멘토링	▶참여팀 대상 집합교육 추진(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수시) ▶경영, 투자, 기술 등 소속 심사역·멘토단과의 1:1 멘토링 * 현장·실무경험을 보유한 성공창업자, 투자자, 기술·경영 전문가 등 ** (육성계획수립) 참여 사업자별 경영진단 실시 후 육성계획 수립 ※ 소속 심사역과의 1:1 멘토링 필수 (1팀별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비 *1.6억이상	네트워킹	▶국내·외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사, 고객, 투자자, 성공창업자, 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 * 선정 AC(2개사) 간 보육기업 공동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1회 이상 필수
	투자연계	▶투자유치 행사 개최 :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 참여팀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성과공유회 등 개최 및 운영 - IR 진행을 위한 투자사 초청, 참여팀 IR 피칭 컨설팅 및 피드백 등 * 데모데이 행사는 AC(2개사) 간 공동 추진할 수 있음	
	성과 및 후속관리	▶성과지표(KPI) 설정 및 관리, 성공사례 발굴 및 관리 ▶기업 후속투자 연계·유치, 해외진출 지원, 상호협력 등 * 사업종료 후 후속지원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 사업종료 후 3년간 창업여부,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유치 금액, 특 허등록 건수 등 성과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회계정산	▶사업비 회계정산 *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 진행 (국고지원금의 1%)	

* (경영체별 KPI) 참여 사업자별 사업성과 목표 제시 (최소 3개 이상)

** 기타 상기되지 않은 활동이나 참여 경영체 역량을 강화하고 육성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사업은 공사와 협의 후 자유롭게 추진 가능

□ 사업관리

① 성과관리

-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또는 참여기업 성과(매출액,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상시 관리 및 취합

② 사업현황 및 결과 보고

구분	내용	제출시기
주간보고	· 프로그램 추진 결과 및 진행 상황, 차주 추진계획 현황 보고	주 1회
중간보고	· 계획 대비 추진 상황, 전체 성과지표 달성도 등 중간점검 · 사업 관련 이슈 및 향후 이행 계획 보고	8월(예정)
최종보고	· 농식품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 프로그램 및 참여기업의 성과·실적 취합 후 최종보고서 제출	12월(예정)
기타	·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인력, 참여기업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③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교부) 총 2회에 걸쳐 분할 교부하며 협약 후 70%, AC社별 기 지급액의 70% 이상 소진 시 잔여 30%를 사업비 전용 계좌로 지급
- (집행) 사업 매뉴얼을 준수하여 비목에 맞게 집행하며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정산) 주관기관이 정한 횟수·기한에 따라 사업기간 내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집행 내역 검토 및 정산

* 회계정산비는 사업비 내 편성하며, 세부 금액(총사업비의 1%이내)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④ 기타사항

-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등 참석
- 그 외 기타 사업 관련 전반 요청사항 대응

□ 사업 추진일정

단 계		내 용	일정
공고 및 선정	사업공고	농식품 창업정보망/ K-startup / 6차산업 홈페이지 등 공고 * 접수 : jeongin@ekr.or.kr	2월 초
	수행기관 선정	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2社 선정	3월
	협약 체결	협약서 검토 및 협약 체결	3월
사업 추진	육성 기업 발굴·선발	엑셀러레이터 참여 육성기업 자체 모집 및 선발 * AC별 육성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모집기간 상이	4월
	프로그램 운영	교육, 멘토링, 컨설팅, 사업연계, 투자유치 등 추진	5~10월
	데모데이	후속 투자를 위한 데모데이 개최	10~11월
	매칭투자	초기자금 직접투자 * 투자성과 증빙을 위한 투자계약서 제출	~10.31
결과 보고 및 정산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기간(11월) 이내, 회계정산 완료 * 수행기업은 지정된 회계사무소에 사업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정산자료 제출 필수(모든 사업비는 11월까지 집행 완료)	11~12월
	결과보고 및 평가	사업종료 엑셀러레이팅 결과보고·평가 진행 * 추진성과 결과보고서 및 기타 실적 관련 요청자료 제출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 연장 우선검토(예정)	11~12월
사후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3년간)	12월

※ 상기일정 및 세부 내용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C社의 육성기업 발굴 · 선발 시 유의사항

○ (선발대상)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인 (예비)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받은 경영체

** 미인증 경영체 경우 (예비)인증 기준 충족 기업에 한하여 ~11.30까지 (예비)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총 선발규모 수의 30% 이하 범위에서 선발 가능

○ (선발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10社 이상

* 예비 순위제도 등으로 중도포기 경영체 발생 시에도 최소 10개소 유지

○ (선발방법) AC 개별 공고 게시* 후 자체 평가 기준·과정을 통한 선발

* 농식품창업정보망, K-startup, 6차산업닷컴 등 게시 (사업 주관기관에 사전 보고 필수)

○ (선발 절차) 초기선발, (필요시)추가선발

◦ (초기선발) 10개소/AC社 이상

◦ (필요시-추가선발) 사업종료 4개월 전까지(~8.31) 추가 보육기업 발굴 가능



* 보육기업 모집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 최종 선발 보육기업 경우 필요시 농어촌공사(주관기관)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추가 선발 경영체는 반드시 잔여기간 보육프로그램 제출 必

○ (모집홍보) AC社 자체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1회 이상의 사업설명회 시행

○ (협약 체결) AC社는 최종 선발한 육성기업과 협약체결 필수

○ (유의사항)

① 동일한 사업 아이템, 사업내용 등으로 당해연도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로 선발*될 경우 중복 선발 불가

* 대표사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의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등

② 최종 선발된 육성기업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3년간 추진성과 제출

* 필수제출 성과지표(3) : ① 총 매출액 / ② 고용인원 (대표자 제외) / ③ 투자유치(직접·후속) 및 기타 주관기관 요청사항

4

AC모집(신청) 및 선발

□ 모집(신청)기간 : 2026. 2. 12. (목) ~ 2026. 3. 5. (목) 17:00까지

□ 모집규모 : 액셀러레이터 2社

□ 지원예산 : 280백만원/社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서류 제출 후 유선 확인 권고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AC 업무담당자
- (이메일) jeongin@ekr.or.kr / (연락처) 031-8084-9558

□ 선정평가 일정(안)

① 모집공고·접수	② 적격검토	③ 서류평가	④ 발표평가	⑤ 최종선정
농식품창업정보망, K-Startup, 6차산업닷컴 등	자격요건 검토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3배수)	선정자 개별안내 (2개社)
'26. 2. 12. ~ 3. 5. 17:00	'26. 3월 초	'26. 3월 중	'26. 3월 중	'26. 3월

* 각 평가 과정은 대상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신청기업 규모가 선정규모(2社)의 3배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

□ 선정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내·외부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적격검토를 통해 자격요건 검토 후 수행기업 역량, 사업계획 등 서류평가 결과 상위 6개社(3배수) 대상으로 발표심사 진행, 최종 최상위 2개소 선정
- (평가결과) 선정 결과 유선으로 개별 안내

* 선정기업 불참 의사 발생 시 차상위 순으로 추가 합격 기회 부여

**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사업' AC社는 본 사업과 동시수행 불가

< 평가 방식 >

- 평가는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고득점인 순으로 선정
- 협약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2개소) 선정
-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공고 및 평가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시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농어촌공사의 승인 하에 제3자가 발표 가능 * 단,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제참여자에 한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 내용	배점
서류 심사	수행기업 역량 (20)	재무안정성	- 수행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5
		수행기업 경력	- 수행기업의 AC 등록 이후 운영 경력	5
		인력확보현황	-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절성	5
		투자 실적	- 최근 3개년 내 투자 유치실적	5
	정책부합성 (10)	사업 이해도	- 사업 목표 설정의 적절성 -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업무실적	10
	사업수행 계획 (50)	프로그램 구성	- 연간 추진 일정 및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 - 참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의 적절성	20
		투자계획	- 매칭투자재원 확보 방안 및 지원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사업 인프라	-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 네트워킹 확장 및 협업 유도방안	10
	성과목표 및 후속관리 (20)	성과목표	- 지표 설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10
		사후관리	- 참여 경영체 사후관리 방안의 적절성 및 현실성	10
합 계			100	
발표 심사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적 명확성·타당성 및 농촌융복합산업 이해도	10
	수행기관 역량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수행조직의 전문성	10
	사업추진 의지		-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10
	사업 현실성 및 구체성		-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 - 참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구체성 - 매칭투자 자원 확보 및 투자계획의 구체성·현실성	40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참여기업 성장 및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기여 정도 - 참여기업 대상 후속 투자 지원계획 - 네트워킹 확장 및 협업 유도 방안	20
	사업관리		- 참여기업 관리 등 사업전반 운영 및 일정의 적절성	10
	합 계			100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표1】** 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 참고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시 인정
(유효기간 경과자료 제출 및 미제출 시 '0'점)

【별표 1】 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점
AA+,AA0, AA- 이상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 이상에 준하는 등급	5
A+ 이상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시 0점으로 평가
3.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제출서류

※ 컨소시엄으로 지원할 경우 제출서류는 기업당 1부씩 모두 제출

구분	필수 제출서류	비고	
작성 제출	1	지원신청서	서식1
	2	사업수행계획서	서식2
	3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서식3
	4	참여인력 이력서	서식4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5
증빙 서류	7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9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
	10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
	11	재무제표 * 최근3개년(23년,24년,25년)	-
	12	기타 증빙서류(투자실적, 투자재원, 참여인력 재직증명 등)	-

제출 시 유의사항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또는 6차산업닷컴(www.6차산업.com) 등에서 **첨부서류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농식품창업정보망 : [사업공고] - [외부지원사업]
 - 6차산업닷컴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제출서류는 번호순으로 폴더 생성 후 폴더에 관련 자료를 정리,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 **메일제목 및 첨부파일명 준수 :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_업체명_대표명.zip**
 - * 대용량 파일 첨부방식 확인 (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클라우드 URL의 경우 확인 불가)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작성 발각 시, 사업선정 취소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출한 자료는 반납되지 않음)
-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접수 시, 대표 기업이 취합하여 접수**
 - * 컨소시엄은 두 기업 모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내 서류 제출 **必** (유효기간 경과자료 제출 및 미제출 시 '0'점)

□ [신청자격] 공고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②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공동)대표
- ③ 상근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 확보

- 인력구성 : 과제 책임자 1인, 실무총괄자 1인, 실무담당자 1인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항4호」를 준용해야 하며 과제 책임자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 및 운영 **3년 이상 경력 필수**

** 과제 참여자의 참여율은 수행 중인 타 정부 지원사업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④ 자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험 보유하여야 함
- 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국내·외 벤처캐피탈(VC), 협력기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을 것
- ⑥ 실무경험(해외진출 등) 및 Exit 경험이 있는 성공 창업인,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전문가, 벤처창업관련 전문가, 투자자 등의 멘토단 구성 필요
- ⑦ 매칭투자자금(자체재원)* 보유 : 사업종료 2개월 전(~10.31)**까지 수행 기업 자체재원 활용(200백만원 이상) 투자집행 완료 필수

* 국고지원금에서 집행 불가 / 업체별 차등 투자 가능

** 매칭투자 완료 일정은 사업진행 내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음

*** 후속 연계투자는(~11.30까지) 수행

- ⑧ 본 모집은 컨소시엄이 가능하며, 협력기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2社 모두 액셀러레이터(AC) 등록 필수, 대표기업을 선정해야 함

* 사업비의 경우 대표기업에 일괄 지급 예정

- 업무분장(내용 및 비율) 사업계획서에 명기, 책임여부는 분장 비율에 따름

- 각 협력기업체 구성원이 다른 협력기업을 구성하여 중복 지원·참여 불가

- 선정 이후 신규 컨소시엄 구성 및 하청 또는 재하청 불가

□ 신청제외 대상

○ 공고 마감일 기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불가

- ①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한 경우
 - * 선정 이후 허위 작성 사실 발각 시 즉각 철회, 향후 타 정부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②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사채업 포함)
- ③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④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
-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⑥ 접수 마감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과제참여 제한자가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제재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⑦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을 초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연구자는 응모할 수 없음
 - * 위반 시 협약 후에라도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및 정부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음
- ⑧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 후 마감일 이전까지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필수이며, 미확인
으로 인한 누락 등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 책임임
- 신청기업은 공고문,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 시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
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하에 제3자*가 발표 가능

*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제참여자에 한함

□ 선정 후 유의사항

○ 채권보전 및 협약체결

- 선정된 액셀러레이터(이하 수행기업)은 협약 시 정부지원금(국비) 해당 분야에
대한 보증보험증권(협약종료일+6개월, 선정기업 부담)을 제출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주관기관)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주관기관-수행기업
간 협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협약 체결

○ 성과목표 달성 노력

- 수행기업은 본 사업 필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수시점검 및 보고

- 수행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주관기관이 요
청하는 형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주간보고 등
- 주관기관은 수행기업의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며, 불이행 내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이때 수행기업은 시정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며,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산보고

- 수행기업은 사업종료 1개월전(~11.30)까지 모든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문 제출
- 사업추진 과정중 주관기관 및 지정 회계법인이 정산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전체 사업비에 대
한 정산보고서 및 회계정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 금액에서 제외
-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 및 사용 방법은 수행기업에게 별도 안내

○ 최종결과보고

- 수행기업은 본 사업의 일련이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자료(영상,사진 등)를 포함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1개월 전(~11.30)까지 주관기관에 제출

○ 자료제출 의무

- 수행기업은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더불어 수행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본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수행기업은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작성 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1인)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제재사항

- 수행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일부러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음
- 또한 수행기업이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 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받을 수 있음
- 매칭투자, 지원기업의 (예비)인증 획득* 등 기타 의무사항 미준수 시 사업 취소, 지원금 환수 조치, 정부사업 참여제한, 평가 시 불이익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이 발굴·지원한 미인증 기업은 11.30까지 (예비)인증획득 필수.
- 액셀러레이팅을 위해 선발한 (예비)인증사업자가 타인의 아이템 및 기술 등을 모방 및 도용 시 선발 취소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예비)인증사업자와 수행기업에 있음

□ 기타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 기관과 협의 진행해야 하며, 주관기관 기준에 따름.

7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접수 및 문의처 : 산업육성부 AC지원 사업 업무담당
- (이메일) jeongin@ekr.or.kr / (유선번호) 031-8084-9558
* 접수 후 마감일 이전까지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필수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세부내용은 www.6차산업.com 참고 : [6차산업 인증제도]-[인증절차 및 방법]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 (농촌융복합산업)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3항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 *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농촌융복합을 영위하는 경영체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인증서 부여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유형) ① 본 인증 ② 예비 인증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요건

- (인증요건) 사업장 입지, 주재료 비율, 사업성과 등 필수 요건 충족 필요

구분	세부내용	본인증	예비인증
대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	○
사업장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에 소재 	○	○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형태 :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주원료: 국산100% (지역 50%이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원료)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한 농산물(국산 100%)을 사용하고 -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 (다른 사도와 접해있는 사군의 경우 인접 사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48백만원) 이상 	○	제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마다 갱신 		

2026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수행기업명	
작성일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 ※ 사업수행계획서 양식(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지 말 것
- ※ 반드시 한글(hwp)로 작성하며, 폰트는 휴먼명조 11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수행계획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공란 없이 최대한 상세히 기재할 것
- ※ 컨소시엄의 경우 표지의 기업명 및 대표자란을 추가하여 병기 및 날인

목 차

※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작성 후 목차 및 쪽 번호 기재

I. 수행기업 현황	00
1. 일반현황	00
2. 조직 및 참여인력	00
3. 멘토진 현황 및 활용계획	00
4. 지원성과 및 실적	00
II. 사업 운영계획	00
1. 프로그램 개요	00
2. 프로그램 운영	00
3. 투자계획	00
III. 성과목표 및 관리	00
1. 성과목표	00
2. 성과관리	00
IV. 사업비 집행계획	00
V. 기타사항	00

I 수행기업 현황

※ 컨소시엄의 경우 아래의 내용은 표를 추가하여 기업별 기재 :

1-1~2.. 일반현황(대표(참여)기업), 2-나. 참여인력 현황(대표(참여)기업), 3-가. 주요 멘토진 현황(대표(참여)기업 내부), 4-1~2. 지원성과 및 실적(대표(참여)기업)

1. 일반현황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	년	월	일		
액셀러레이터 등록일	년	월	일		
현 종업원 수 (서류제출일 기준)	총인원	명		(정규직: 명 / 비정규직: 명)	
재무현황 (최근 3년, 백만원) ※ 재무제표 근거, '25년은 가결산 기재	구분	2023	2024	2025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운용(조성) 펀드 ※ 본 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펀드 기재 (표 추가하여 작성)	운용 금액 합계				
	펀드명				
	결성기간				
	결성금액				
주요 연혁	기간 (년월)	주요내용			
	0000.00.-0000.00.	설립, 상호·대표변경, 합병·분할·상장, 및 창업지원 관련 주요 연혁			

2. 조직 및 참여인력

가. 수행조직도

※ 본 사업의 참여인력 조직도를 도식화하여 작성 및 업무분장 내용 기재

나. 참여인력 현황

담당업무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요경력	참여율 (%)	참여과제수 (건)
수행책임자		00.00.00	00팀	팀장		30%	2
실무총괄자							
실무담당자							

※ 사업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 포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포함

※ 각 기업당 최소 3명 이상의 상근·전담 관리 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멘토진 현황 및 운영계획

가. 멘토진 현황

- ※ 멘토의 전문분야, 상세역할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실제 활동할 내용만 기재
- ※ 농식품 및 농촌융복합분야 멘토(전문가) 필수

내부 멘토진 현황

구분	성명	주요내용			
내부		소속		전문분야	
		직위		이메일	
		주요경력			
내부		소속		전문분야	
		직위		이메일	
		주요경력	창업, 해외진출, M&A, IPO등의 경험 등은 필수 기재		

외부 멘토진 현황

구분	성명	주요내용			
외부		소속		전문분야	
		직위		이메일	
		주요경력			
외부		소속		전문분야	
		직위		이메일	
		주요경력	창업, 해외진출, M&A, IPO등의 경험 등은 필수 기재		

나. 멘토 확보 및 활용계획

- ※ 참여경영체 성과 달성을 위한 멘토링 계획, 추가 멘토 확보 방안, 수당지급여부 등 기재

멘토 확보 계획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 중고덕 12p

멘토 활용 계획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 중고덕 12p

4. 지원성과 및 실적 ※ 프로그램별로 성과총괄표, 성과세부표, 주요성과 및 역할 작성

가. 성과 총괄표

프로그램명					
누적 운영기수	상시 지원인 경우 운영 기간	기수당 평균 선발기업 수		누적 지원기업수	
직접투자 총액(천원)		직접투자 평균액(천원)		직접투자율(%)	
후속투자유치 총액(천원)		후속투자유치 평균액(천원)		후속투자 유치율(%)	
기타 성과	주요 보육기업, M&A, 매출발생 등 주요성과 기재				

- ※ 후속투자 정의 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 타 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
 ② 프로그램 졸업 이후 해당 수행기업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
- ※ 계산식 - 지원기업 생존(폐업)율: 총 생존(폐업)기업 수 / 총 지원기업 수 x 100
 - 직접투자 평균액: 총 직접투자액 / 총 직접투자 기업 수
 - 직접투자율: 총 직접투자 기업 수 / 총 졸업기업 수 x 100
 - 후속투자유치 평균액: 후속투자 유치 총액 / 총 후속투자유치 기업 수
 - 후속투자 유치율: 총 후속투자 유치 기업 수 / 총 졸업기업 수 x 100

나. 성과 세부표 ※ 각 프로그램의 운영 기수별 작성

기간	선발 기업수	직접투자			후속투자유치			생존율 (%)
		기업수	총액 (천원)	평균액 (천원)	기업수	총액 (천원)	평균액 (천원)	
(1기) '20.1~6월								
(2기) '21.1~6월								

- ※ 모든 직접·후속투자 실적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이체내역서, 주주명부 등)은 반드시 제출(평가시 증빙된 실적만 인정하며, 필요에 따라 원본확인 예정)
- ※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되(민감정보 삭제가능), 기업의 기밀유지 등의 이유로 계약서 공개가 어려운 경우는 투자유치사실 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다. 주요 성과 및 역할

운영기간	기업명	주요 성과*	역할**
(1기) ‘20,1~6월	A사		
(2기) ‘21,1~6월			

* 국내·외 투자유치, 매출 발생, 수상내역, M&A, IPO 등 핵심성과 제시

** 각 성과 달성에 기여한 부분 상세 기재

5. 대내·외 협력 기업·기관

※ 실제 협업 가능한 기관 및 기업만 기재

기업명	유형*	주요내용		
		대표자	전문분야**	
		대표자		전문분야**
		소재지		
		협력 내용 및 지원계획***		
		대표자		전문분야
		소재지		
		협력 내용 및 지원계획		
		대표자		전문분야
		소재지		
		협력 내용 및 지원계획		

* 유형은 액셀러레이터/VC/엔젤/벤처기업/기타법인 등 기재

** 전문분야는 투자/교육/사업화 등 기재

*** 최근 3년간 수행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추진 현황 및 세부 협력 내용을 요약 기재

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개요

가.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	정량	
	정성	
기획의도 및 필요성		
농촌융복합분야 관련 파급효과		
프로그램 내용 및 범위(요약)		

나. 프로그램 차별화 포인트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 중고덕 12p

나. 프로그램 운영 총괄표

구분		세부내용	비고
참여사업자 선정			
경영진단 및 로드맵 설계			
참여사업자 역량강화			
자체투자			
후속투자			
사업화자금 지원 (필요시)			
사후관리			
기타활동			

※ 기업별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 가능

2. 프로그램 운영

가. 참여사업자 모집·선발

※ 모집대상·방법, 평가항목 및 절차, 평가일정, 평가위원 구성, 홍보계획 등

모집 개요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덕 12p

선발 개요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덕 12p

홍보계획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덕 12p

※ 홍보계획, 선발일정, 모집대상·방법, 평가항목 및 절차, 평가위원 구성, 추가 발굴방안 등 제시

나. 프로그램 구성

※ ‘액셀러레이터 역량 강화 및 홍보방안’ 등 항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작성

경영진단 및 로드맵 계획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덕 12p

참여사업자별 역량강화(교육, 마케팅, 멘토링 등) 계획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덕 12p

네트워킹 계획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덕 12p

* 참여사업자의 시장창출 지원을 위한 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계획 작성

데모데이 개최계획

○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덕 12p

* 국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데모데이 계획 수립(데모데이 1회 이상 개최)

다. 추진과정

구분	'26년									
	3	4	5	6	7	8	9	10	11	12
▶ 참여기업 모집, 오리엔테이션 등										

3. 투자계획

○ 매칭(직접) 투자계획 ※ 10.31까지 투자금 입금 완료 필수

구 분	계 획
자체투자 목표액	
투자대상 선정방법	
투자금 조달방안 (투자금 확보현황 포함)	
투자금 회수계획	
기타사항	

○ 후속 투자계획 ※ 11.30까지 투자금 입금 완료 필수

구 분	계 획
후속투자 유치규모	
후속투자금 조달방안	
후속투자금 회수계획	
기타사항	

* 매칭(직접)투자는 참여사업자에 대한 평균 투자규모, 투자대상 선정방법, 투자금 조달방안 및 회수계획, 투자금 확보현황 등을 작성하며, 사업종료 2개월 전(~10.31)까지 매칭투자 필수 (최종적으로 완료한 투자이력은 결과평가 시 반영)

** 후속투자는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후속투자 유치규모, 계획 등 작성, 사업종료 1개월 전(~11.30)까지 후속투자

○ 참여사업자 사업화자금 지원계획 (필요시)

-

* 참여사업자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자금(자체재원) 지원계획 작성

III

성과목표 및 관리

1. 성과목표(필수)

※ 필수지표는 기관제시 항목으로 변경불가, 자율지표는 필수지표와 중복되지 않도록 AC 자체적으로 3개 이상 제안

성과지표*		목표	달성방안	비고	
필수 지표 (기관 제시)	전년대비 평균 매출증가율 (참여기업)	35%		고정	
	전년대비 평균 신규 고용 (참여기업)	평균 증 1명/社		고정	
	투자 유치	직접투 자	2억원 이상	달성방안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상세히 기술 ex. 평균 투자규모, 투자대상 선정방법, 투자재 원 등 작성(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매칭투자 필수, 차등지급가능)	고정
		후속투 자	1억원 이상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을 통 해 확보가능한 후속투자 유치규모, 방안 등 작성	
자율 지표	자체 성과목표1	목표기재			
	자체 성과목표2	목표기재			
	자체 성과목표3	목표기재			

* 투자유치, 신규고용, 매출증가율은 필수항목으로 목표수치를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 가능

※ 자체 성과목표는 하단 표에서 선택 기재, 주관기관 검토 후 확정하며 최종평가에 반영됨
- 자체 KPI 표는 삭제 후 제출

분야	자체 KPI(안)
사업화	참여팀 사업화 계약 체결 건수
	대·중견기업·공공기관 PoC·실증 연계 건수
	정부 R&D·사업화 과제 연계 건수
지식재산권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지식재산권 등록(특허·상표 등) 건수
글로벌 진출	해외 전시회·IR·상담회 등 글로벌 프로그램 연계 기업 수
	해외 파트너십·MOU 체결 건수
	글로벌 투자자·기관 연계 미팅 건수
네트워크	산업·투자·기술 전문가 멘토링 연계 횟수
성과관리	외부 전문기관(VC·대기업·연구기관 등) 협업 연계 건수
	참여팀 중 후속 연계 발생 비율(투자·사업화 등)

2. 성과관리

휴먼명조 15p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덕 12p

휴먼명조 15p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덕 12p

휴먼명조 15p

휴먼명조 15p

- 휴먼명조 14p

* 중고덕 12p

* 후속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공간 및 홍보, 해외진출지원, 행사·사업성과 모니터링 등 계획 작성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IV

사업비 집행계획

비목		세목	산출내역 및 산정근거	정부지원금 (천원)	구성(%)	
정부 지원금	인건비 (역량강화 포함) ※1.2억이내					
		소계				
	프로그램 운영비 ※1.6억이상					
		회계정산 수수료	총사업비의 1%	2,800	1% (고정)	
	소계					
정부지원금 합계				100%		
비목		세목	산출내역 및 산정근거	자부담 (천원)	비 고	
자부담	매칭투자* ※2억이상		프로그램 참여기업 직접투자 자금 (AC 법인 또는 법인이 운용 중인 펀드에 한정)			
		소계				
	사업화 자금 ※필요시		해당 시에만 작성 (정부지원금 집행 불가)			
소계						
자부담 합계						

* 액셀러레이터 자체 재원으로 2억원 이상 초기 직접투자 필수(정부지원금에서 지출 불가)

【붙임 1】 사업비 세부항목

구 분		내 용
인 건 비	인건비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에게만 지급 가능 ** 집행기간 및 기준은 관련 규정 및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프 로 그 램 운 영 비	일반 수용비	▶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사업 관련 출력물 인쇄비,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
		▶ (지급수수료) 평가, 강사, 멘토링, 자문 등 외부 전문가 활용 ※ 외부 전문인력에 해당함 * 이력사항 첨부 必
	매식비	▶ (특근매식비) 경상 사무를 위해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지급 임차료	▶ 차량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집기 등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임차료
	용역비	▶ 홍보용역, 일부 컨설팅, 행사운영 관련 등 ※ 본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함
	기타 운영비	▶ (교육훈련비) : 농식품 분야 투자 관련 역량강화 교육, 포럼 참석 등 ※ 본 사업과 무관한 복지차원에 대한 교육 등은 해당없음(건강, 취미, 여가 등)
		▶ (행사비) 행사(데모데이, 강의, 교육 등)를 위한 대관, 임차, 소요물품 구입 등 ▶ (광고선전비)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행사비, 광고선전비 :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한함 (본 사업 내용이 아닌 기업 자체에 대한 광고 등은 해당하지 않음)
	여비	▶ 참여인력이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한 경우 교통비, 숙박비(국내외)
	업무 추진비	▶ 행사, 멘토링, 투자연계 업무협의 등에 사용되는 식사/다과비 ※ 내부인력간 회의 인정 불가
회계 정산비	▶ 지정 회계법인에 위탁 정산하는 비용	

V

기타사항

※ 추가 기재 및 언급 필요 내용 있을 시 자유롭게 작성

신청 자격의 적성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취소 등 제재 조치의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확인사항	확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대한민국 국적자가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공동)대표	
▪ 상근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 확보* 가능 (과제책임자 1인, 실무총괄자 1인, 실무담당자 1인 등) * 과제 참여자의 참여율은 수행 중인 타 정부지원사업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과제책임자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 및 운영 3년 이상 경력 보유	
▪ 자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험을 보유	
▪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국내·외 VC, 협력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 실무경험(해외진출 등) 및 Exit 경험이 있는 성공 창업인, 농식품분야 전문가, 벤처창업관련 전문가, 투자자 등의 멘토단 구성	
▪ 매칭투자자금*(자체재원) 보유 *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수행기업 자체재원 (2억원 이상) 투자	
▪ 공고문 내 신청제외 대상 해당 없음 * 채무불이행, 세금 체납, 부도 및 휴·폐업,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본 수행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지원금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대표자 :

직 인

수행책임자 :

서 명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 귀하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서

※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개별 작성

2026 농촌융복합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사업				
참 여 인 력 이 력 서				
가. 인적사항				
소속기업명		부서/직위		
참여인력 성명		출생년도		
사업 참여기간		본사업 참여율	00%	
주소(자택)		전화번호	TEL	
			H.P	
		E-mail		
나. 학력 (최종학력부터 역순으로 (전문)학사 학위까지만 기재)				
기간		학력		학위
시작(년월)	종료(년월)	학교명	전공	
<i>2002.3</i>	<i>2009.2.</i>			
다. 경력 (현직장(최종직장)부터 역순으로 기재)				
기간		기업명	최종직위	담당업무 및 주요 프로젝트
시작(년월)	종료(년월)			
<i>2010.2.</i>	<i>2020.2.</i>			

